

## 2020년 용인시 다함께 돌봄사업 협약 주요 내용

협약당사자	용인시
	공동주택 (○○○ 아파트)
협약목적	용인시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·운영을 위해 공동주택 내 관리동 돌봄센터 건축물 및 부속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사용시설	시설의 소재지 : 시설의 면적 :
사용기간	최초 개소일로부터 10년
의무사항	공동주택)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용도변경 행위신고 선행</li> <li>- 전기, 가스, 수도, 난방 등 공공요금 별도 분할 및 설계도 등의 적극 제공</li> <li>- 돌봄센터 이용을 위한 주민홍보 협조 등</li> </ul> 용인시) 돌봄센터 설치·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성실한 수행
거주자 자녀의 우선입소	거주자 아동의 우선 입소비율은 돌봄센터 정원의 70%

## 2020년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신청서

아파트명		입주자대표 성명 (생년월일)	(            )
소재지			
세대수		세대원수	
설치 희망장소	(면적:    m <sup>2</sup> )		
실무담당자 (직·성명)		전화번호	

2020년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신청합니다.

2019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아파트명 :

입주자 대표 (신청자) :

### 용인시장 귀하

< 첨부서류 >

- 시설설치 주민동의서 1부.
- 설치대상지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각 1부.

## 시설 설치 주민동의 확인서 (예시)

용인시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에 따라 \_\_\_\_\_ 아파트  
\_\_\_\_\_ 공간에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 
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함을 입주자를 대표하여 확인합니다.

※ 입주자 대표 현황 : 총        명

연번	동·호수	직책	성명	서명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6				
7				
8				